주주 귀하

LOTTE CHEMICAL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제 40 기 정기)

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3 조 및 제 542 조의 4 와 정관 제 18 조에 의거 제 40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6 년 3 월 18 일(금), 오전 9 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 길 15
전문건설회관 3 층 국제회의실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나. 의결사항

제 1 호 의안 : 제 40 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 3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 명, 사외이사 3 명)

제 4 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 5 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사항 등의 비치
상법 제 542 조의 4 등 관련법규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사항 및 의결 권대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lottechem.com) 와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참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참석>
- 개인주주 : 위임장(주주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주주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 위 사항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년 3 월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 길 51
롯데케미칼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허 수 영

■제2호 의안 롯데케미칼 정관 변경안 :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25. 생략 26. 위 각호에 관련되는 일체의 사업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6. 전기공사업 27.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시설운영관리업 28. 위 각호에 관련되는 일체의 사업	신규사업(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공사 사업, 수처리 사업) 영위(관련 면허 취득 등)를 위하여 정관상 목적사업 추가
제 2 장 자본 및 주식	제 2 장 주식	제목 변경
제8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일천오백만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9%이상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 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뒷부분 생략)	제8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이상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③ 우선주식은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 배당 우선권을 가지는 주식을 독립적으로 또는 여러 형태로 조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참가적 우선주식을 발행할 경우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 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⑤ 제3항에 의하여 누적적 우선주식을 발행할 경우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⑧ 이사회는 우선주식의 발행시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고,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우선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뒷부분 생략)	• 발행주식총수의 증가에 따라 우선주식 발행한도를 연동 • 우선배당률, 우선주식 종류, 존속기간을 다양화하여, 보다 용이하게 자금 확보 가능

롯데케미칼 정관 변경안 :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제10조 (신주 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과 국내외 금융기관 및 외국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본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신주 발행 방식, 절차 및 실권주 처리를 법령에 따라 구체화 • 개정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반영

롯데케미칼 정관 변경안 :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본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본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롯데케미칼 정관 변경안 :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제10조의 3 (일반공모증자) ①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하는 외국의 합작법인과 국내외 금융기관 및 외국투자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삭제	변경(안) 제10조에 반영
규정 없음	제10조의4 (주식매수선택권) ① 본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본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본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고급인력 유치와 전문경영인에 대한 동기부여수단으로 활용 가능 • 상법 제340조의2, 제340조의3, 제542조의3 반영

롯데케미칼 정관 변경안 :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본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7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재임 또는 재직기간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정한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롯데케미칼 정관 변경안 :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②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제15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②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문구 명확화
규정 없음	제16조(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결정하고, 대표이사에게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그 실행을 위임할 수 있다.	• 사채 발행 방법 간소화 • 상법 제469조 제1항, 제4항 반영

롯데케미칼 정관 변경안 :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제16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7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본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전환사채 발행 방식을 법령에 따라 구체화 • 개정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0, 제165조의6 제1항 및 제4항 반영

롯데케미칼 정관 변경안 :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제17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8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본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방식을 법령에 따라 구체화 • 개정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0, 제165조의6 제1항 및 제4항 반영

롯데케미칼 정관 변경안 :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제19조 (소집권자)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소집권자)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 번호 변경에 따른 수정
제20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1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주주총회 소집통지 방법 다양화(전자문서 방식) • 상법 제363조 반영
제22조 (의장)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의장)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 번호 변경에 따른 수정

롯데케미칼 정관 변경안 :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제26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방법 다양화 • 상법 제368조의2 제1항 반영
제27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본 회사의 주주에 한하며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본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본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주주 아닌 자도 의결권 대리행사 가능하도록 함 • 상법 제368조 제2항 반영
제30조 (이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31조 (이사의 수)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하로 한다. ② 본 회사의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이사의 최대 한도를 규정

롯데케미칼 정관 변경안 :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제33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3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규정 없음	제34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31조에서 정하는 인원수를 미달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1조에서 정하는 인원수를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외이사 결원시 보선 방법 추가 • 상법 제542조의8 제3항 반영
제35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업무를 총괄하고,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결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미 명확화
규정 없음	제37조(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본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으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이사의 적극적인 경영을 독려하고,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이익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 • 개정상법 제400조 제2항, 제415조 반영

롯데케미칼 정관 변경안 :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주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8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대표이사(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는 회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이사회를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긴급한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집통지기간 단축 • 상법 제390조 제3항 단서 반영
제37조 (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집행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관하여는 제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 (위원회)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투명경영위원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관하여는 제38조,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당사에 실제 설치된 위원회만 반영(집행위원회 삭제) • 투명경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 추가 (상법 제393조의2 제1항) [당사에 설치된 내부거래위원회(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 및 윤리경영)와 동일]

롯데케미칼 정관 변경안 :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제37조의 1 (집행위원회) ① 이사회와는 별도로 신속하고 원활한 경영의사결정을 위하여 상임이사 및 집행간부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삭제	집행위원회는 당사에 실제 설치된 위원회가 아니므로 삭제
제37조의 2 (감사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제37조 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2/3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감사위원의 자격은 상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사외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삭제	별도의 장(제6장)으로 떼어 자세하게 규정
제37조의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제37조 ①의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9조의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외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조문 번호 변경에 따른 수정

롯데케미칼 정관 변경안 :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제39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제4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 제398조 및 제415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상법 제397조의2, 제398조, 제415조의2 제3항 반영 (법령상 이사회 특별 결의 사항 추가) • 상법 제391조 제2항 반영(컨퍼런스콜 방식의 이사회 결의 허용)
규정 없음	제 6 장 감 사 위 원 회 제45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감사위원회 규정 상세화 • 상법 제415조의2, 제542조의11, 제542조의12 반영

롯데케미칼 정관 변경안 :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규정 없음	제46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대표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 규정 상세화 • 상법 제415조의2 등 반영(감사의 직무 준용)
규정 없음	제47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규정 상세화 • 상법 제413조의2 등 반영

롯데케미칼 정관 변경안 :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제44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② 생략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② 생략 ③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④ 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3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재무제표 승인은 정기주주총회 승인 사항이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 가능하도록 함 • 개정상법 제449조의2 반영
제46조 (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제51조 (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현물배당 방식의 이익배당 허용(다양한 방법에 의한 이익배당 도모) • 상법 규정에 따라 주식배당의 한도 규정(주주의 현금 배당권 보호) • 상법 제462조의4 제1항, 제462조의2 제1항 단서 반영

롯데케미칼 정관 변경안 :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규정 없음	제51조의2(중간배당) ① 본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 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 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 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 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 금 ④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 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 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중간배당 허용 근거 규정 추가 • 상법 제462조의3 반영

■ 제 3 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이사후보자(사내이사 1 명, 사외이사 3 명)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추 천 인	약 력	최대주주와의관계	회사와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
사내이사	이자형 (李自炯)	57.02.24 이사회	現. 롯데케미칼 생산본부장 前. 롯데케미칼 대산 공장장 前. 롯데케미칼 울산 공장장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	김철수 (金徹洙)	56.09.28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前. 관세청 차장 前. 부산세관 관장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윤하 (金潤河)	57.04.09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前. 금감원 일반은행 검사국 국장 前.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대부업팀장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박용석 (朴用錫)	55.02.10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現.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前. 대검찰청 차장 前. 법무연수원장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제 4 호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추 천 인	약 력	최대주주와의관계	회사와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
사외이사	김철수 (金徹洙)	56.09.28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前. 관세청 차장 前. 부산세관 관장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윤하 (金潤河)	57.04.09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前. 금감원 일반은행 검사국 국장 前.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대부업팀장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